

최근 안전 동향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2023.03.10)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b>보고 일시</b> 2023. 3. 10.(금) 14:00 2023. 3. 11.(토) 조간	<b>배포 일시</b> 2023. 3. 10.(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b>담당 부서</b>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b>책임자</b> 과 장 양현수 (044-202-8804)	사무관 이찬중 (044-202-8808)	주무관 정상은 (044-202-8809)
	<b>담당자</b> 주무관 정상은 (044-202-8809)	<b>책임자</b> 팀 장 박완근 (044-202-8990)	주무관 남영우 (044-202-8996)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	<b>책임자</b> 팀 장 박완근 (044-202-8990)	주무관 남영우 (044-202-8996)	주무관 이민진 (044-202-899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노·사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 법령을 전면 정비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하고,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현장 적합성 제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대통령 지시(’22.10월)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예고(’23.1월) 하였으며 이에 이어서,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예시) ▲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설치 기준, 수소산업 안전기준 등 보강·신설,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현행화, 중복조항 정비, ▲복잡한 조문명 및 내용 간결화 등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하여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하게, 참여강조로 개편」 (2023.03.06)

 <b>보도 자료</b> <span style="float: right;">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span>	
<b>보도 일시</b> 2022. 3. 6.(월) 12:00 2022. 3. 7.(화) 조간	<b>배포 일시</b> 2022. 3. 6.(월)
<b>담당 부서</b>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b>책임자</b> 과 장 금정수 (044-202-8920) <b>담당자</b> 서기관 김현아 (044-202-8923)

###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를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참여 강조로 개편

-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3월 7일 행정예고 -
- 중소기업 맞춤형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
- 전체 위험성평가 단계에 근로자 참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 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 현 위험성평가 제도

-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
- ✓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 부담 증가

###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안)

- ① 위험성평가 재정의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보다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
- ②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 간단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분석법 등
- ③ 평가시기 명확화 및 개선  
(현) 최초평가에 준하여 1년마다 정기평가, 건설업의 경우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 실시  
(개정안)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논의하며, 매 작업일 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TBM을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위험성평가 제도 단계적 의무화 법령 개정안 마련 계획  
(’23년 내) 300인 이상 → (’24년) 50~299인 → (’25년~) 50인 미만

##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 적합성」

###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 적합성 확인방법

- 사업주·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 현장점검

### Check List

- 위험성평가 실시 유무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유무
- 현장에서 발생하는 빈도 높은 사고
- 가장 위험한 위험요인
- 수립한 위험성의 개선대책 실행여부
-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전 전파
- 안전교육을 통한 근로자에게 공유·전파여부

### 불시감독 위반 원인

- 조직의 부재
- 조직 역량 부족
- 지침·절차 부재
- 지침·절차 불명확
- 단순누락·시간 및 인력부족
- 기타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에게 재설명 후 후속조치

## 「노동청 수사 결과」

\* 1/26 고용노동부 주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첨부 통계자료 참고

1.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2022. 12. 31.까지 발생한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중, 177건을 수(내)사 중이고,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함 (송치 34건, 내사종결 18건)

구분	발생	송치	기소	내사종결	수(내)사 중	사건처리율 (송치+내사종결)/발생
'22년(1.1~12.31)	229	34	11	18	177	22.7%

2. 법 위반이 없는 18건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단위: 건, %)

합계	법 위반 없음이 명확		법 적용대상 아님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기타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8	8	44.4	3	16.7	3	16.7	4	22.2

## 「노동청 수사 결과」

### 3. 기소송치

- 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 등 34건 사건 송치
- 조항 별 의무위반
  - ❖ 시행령 제4조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 위반 28건(83.2%)
  - ❖ 시행령 제4조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등에 대한 의무 위반 20건(58.8%)
  - ❖ 시행령 제4조 8호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 위반 17건(50%)
  - ❖ 시행령 제4조 3호·5호·8호 규정 위반이 전체의 50%이상

구분	계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위반건수*	126	12	4	28	15	20	5	14	17	9	2
백분율(**)		35.2	11.7	83.2	44.1	58.8	14.7	41.1	50	26.4	5.8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위반조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가 있어 송치 건수와 규정 위반 건수가 일치하지 않음

\*\* 전체 34건의 송치 사건 중 해당 의무위반이 포함된 비율



## 「검찰 수사 결과」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2022. 12. 31.까지 검찰은 송치된 34건 중 11건을 기소하였음

2. 검찰에서 2022년 기소한 11건에 대한 분석

➢ 기소여부(회사별 기준, 하청업체 제외)

기소	불기소
11건(91.6%)	1건(8.3%)*

\* B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실 인정됨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 중대재해 유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1건(100%)	0건(0%)

➢ 중대산업재해 유형(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	나목(산업재해치상 중 부상자)	다목(산업재해치상 중 직업성 질병자)
10건(91%)	0건	1건(9%)

## 「검찰 수사 결과」

### 2. 검찰에서 2022년 기소한 11건에 대한 분석

- 중대산업재해 발생유형(공사현장 또는 공장인지 여부)

공사현장	공장
8건(72.7%)	3건(27.2%)

- 원청회사, 발주처 수사 및 기소여부(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외)

원청회사	하청회사	직영회사	발주처
8건 중 8건 기소	8건 중 0건 기소*	4건 중 3건 기소**	1건 중 0건 기소

\* 하청회사의 경우 적용유예 사업장이 많음(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공사도급액 50억 미만 사업장)

\*\* B사 불기소

- 경영책임자 등 특정

대표이사	CSO
11건 중 11건 기소	1건 중 0건 기소*

\* D사 CSO는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검찰 수사 결과」

### 2. 검찰에서 2022년 기소한 11건에 대한 분석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유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기소건수 11건 기준)

1호(안전보건목표, 경영방침 설정)	2호(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설치)	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조치)	4호(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예산편성 및 평가기준 마련)
5건(45.4%)	0건	7건(63.6%)	2건(18.1%)	11건(100%)*
6호(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개선, 점검)	8호(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조치)	9호(도급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평가 등 절차 마련, 점검)	-
0건	4건(36.3%)	6건(54.5%)	4건(36.3%)**	

❖ 검찰에서는 주로 3호, 5호 나목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이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등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전부 5호 나목(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 문제되었음

## 「검찰 수사 결과」

## 2. 검찰에서 2022년 기소한 11건에 대한 분석

## ➤ 유형별 노동청 송치 건수와 검찰 기소 건수 비교

유형	1호(안전보건목표, 경영방침 설정)	2호(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설치)	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조치)	4호(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예산편성 및 평가기준 마련)
노동청	12건(35.2%)	4건(11.7%)	28건(82.3%)	12건(44.1%)	20건(58.8%)
검찰	5건(45.4%)	0건	7건(63.6%)	2건(18.1%)	11건(100%)*
양호	6호(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개선, 점검)	8호(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조치)	9호(도급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평가 등 절차 마련, 점검)	-
노동청	5건(14.7%)	14건(41.1%)	17건(50%)	9건(26.4%)	
검찰	0건	4건(36.3%)	6건(54.5%)	4건(36.3%)**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구분	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위반건수	126	12	4	28	15	20	5	14	17	9	2
백분율(%)	100.0	35.2	11.7	82.3	44.1	58.8	14.7	41.1	50	26.4	5.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의 유형」

위반 내용*	해당 사건 **	검찰 관할	재해유형	기소일
(1) 절차 자체를 마련하지 않음	1. D산업 [에어컨부품 제조업] 5. 요양병원 증축공사	창원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직업성질병(급성중독) 떨어짐	2022. 6. 27. 2022. 11. 30.
(2)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마련	6. 덕양구 상가신축공사 11.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주지검	낙하물에 맞음 낙하물에 맞음	2022. 11. 30. 2022. 12. 29.
(3)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7. M사(자동차부품 제조업)	울산지검	기계에 끼임	2022. 12. 27.
(4) 작업계획 및 사전조사 미비	5. 요양병원 증축공사 11.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주지검	떨어짐 낙하물에 맞음	2022. 11. 30. 2022. 12. 29.
(5) 기타***	2. L 산업개발 8. 을왕동 근린시설공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천지검	떨어짐 머리 부딪힘	2022. 10. 19. 2022. 12. 29.

\* 중처법 기소사례 11건 중 검찰이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7건을 유형별로 분석

\*\* 사건 번호는 "1부. 중처법 기소사례 분석 및 정리"의 순번과 동일한바, 사건의 개요 등은 1부 자료를 참조

\*\*\* 공소장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무위반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

(공소장 내용 출처: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좌담회 발제 자료, 이하 동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의 유형」

### 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음(미실시)

D산업 [에어컨부품 제조업, 직업성질병(급성중독)], 요양병원 증축공사 (떨어짐)

#### 1) 공소장

- [D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다."
- [요양병원 증축공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

#### 2) 예시

- 사업장 내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관련된 절차 및 제반 서류양식(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방식을 감독하거나 허가제를 운영하는 등의 작업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3) 평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이므로, 재해예방 위험에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실시해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난가능성이 높음

### ▣ 피고인 및 선고 결과

- 선고일 : 23년 04월 06일
- 선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피고인	선고결과	위반사항	비고
원청	주은유평트너스 벌금 30,000,000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안법위반 2)안전조치의무위반 산안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지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1.재해예방에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관한 조치
	대표이사 (정OO)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지사)	
	현장소장 (김OO)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자 (방OO) 벌금 5,000,000원	업무상과실치사	
하청	쥬아OOO O 벌금 10,000,000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현장소장 (권OO)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의 유형」

### 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마련(부적정 평가)

덕양구 상가신축공사 (낙하물에 맞음),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낙하물에 맞음)

#### 1) 공소장

- [덕양구 상가신축공사]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공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동식 크레인 기사 등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 평가할 수 없도록 하였고, (...)”

#### 2) 예시

- 사업장 내 위험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위험장소 리스트가 **실제 현황과 크게 다르거나 최신화되지 않음**
- 최초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결과물을 돌려막기하여 작성함**
- **실제 작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위험성평가 결과표를 작성**
- 협력업체의 경우 **원청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예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함
- **사고 발생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적절히 실시되지 못함**
- 동종재해 또는 아차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3)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의 명문상 (형식적으로) 관련 절차의 마련 및 점검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관련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수사하는 경향 (\*법문을 넘어선 과잉수사라는 비판)
- 다만, 마련한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관리를 요구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마련하였다면 의무 미이행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의 유형」

### 다.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부적정 관리)

M사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계에 끼임)

#### 1) 공소장

-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 문 방호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 “위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에 따라 안전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협착 위험이 높은 다이캐스팅 기계가 작동하고 있어 이를 점검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수회 평가하는 등 (...)”

#### 2) 예시

-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뚜렷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현장 작업자들이 특정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정기감독,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 3)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 11.), 62쪽]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가벌성이 더욱 크다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처벌가능성이 높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의 유형」

### 라. 작업계획 및 사전조사 미비(활용미비)

요양병원 증축공사 (떨어짐),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낙하물에 맞음)

#### 1) 공소장

- [요양병원 증축공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해체작업을 위해 필요한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굴뚝 등 해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확인·개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

#### 2) 예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임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음  
[\*] T/C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로더) 사용, 굴착, 건축물 해체, 중량물 취급 등
- 최초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돌려막기하여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구비함
-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 내지 안전조치 수립이 미흡함**
- 작업계획서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3) 평가

- **위험성평가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었던 사안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포섭되고 있음**
- 사고 관련 작업과 직접 관련된 절차이므로, 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의 유형」

위험성평가 관련 중처법 시행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 분류

-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 적절한 위험성을 부여를 못한 경우
-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우



참여 및 의견수렴 부족

협력업체 관리 미흡

R&R 부적정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소홀

예산 미반영

경영목표와 맞지않음

##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위험성평가)가 없다면 신속히 마련(실시)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지원 활용 (<http://kras.kosha.or.kr>)

## 2. 절차의 실시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적정 평가 및 관리)

- 실제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정 및 현실화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반영)
- 실제로 유해·위험작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
- 사업장 내 작업에 관하여 예상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
-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가 절차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지 매 작업마다 확인하고, 개선

## 3.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반드시 이행(활용)

-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한 요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 정기감독, 안전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유해위험요인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배정하여 지체 없이 조치

## 4. 관련 절차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 : PDCA

- 경영책임자등은 반기(6월, 12월) 보고를 통하여 사업장 내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  
→ 반기 점검을 위한 회의체(예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을 수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5호) / 종사자 의견청취(7호) / 비상대응매뉴얼(8호) / 도급 시 기준 절차 마련(9호)
- 주요 지적사항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 다음 반기 점검 시 개선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위험성평가)의 미실시 또는 부적정 관련 쟁점

구분	문제점	기준
(1) 실시대상	모든 작업?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
(2) 적정	어느 수준?	위험에 대하여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정성(定性)적 또는 정량(定量)적으로 추정하여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3) 예견가능	합리적 예견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원래 실수를 한다는 전제에서 불완전행동도 고려</li> <li>➢ 현재의 사회가치기준을 기반으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고려</li> <li>* 자전거 통행금지 구역에서 정속 주행 중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 충돌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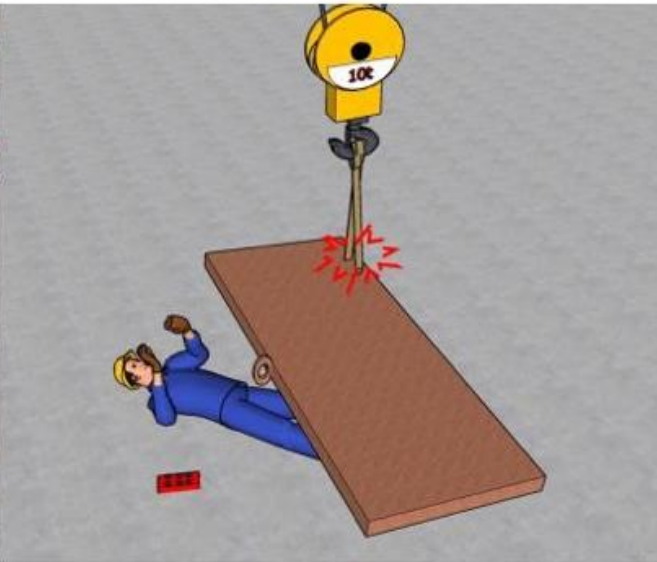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전사적인 참가의 명확화와 근로자의 의견 존중 & 기록과 활용이 중요

**▣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 소재 철강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방열판 보수 작업 중 1.2톤 철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법 마사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

- 원청 경영책임자: 징역 1년
- 원청 법인: 벌금 1억원
- 협력업체 대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제 1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22고합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가.나. A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다. B , 한국제강 대표이사 주거  등록기준지 3.가.다. 한국제강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이사
검 사	김동욱(기소), 김동욱, 우희준, 이영광,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윤관(피고인 B, 한국제강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4. 26.

## 주 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법 적 사 실<sup>1)</sup>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2013. 12. 2. 한국제강 주식회사(현 한국홀딩스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에서 위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는 (주 소 생략)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연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강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한국제강은 2014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강백산업'과 한국제강의 제강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